

## 14. 住宅資材品質管理強化

資料提供：建設部

- 정부는 '92.12.22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을 공포하였는 바, 불량자재로 인한 주택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사용되는 주요구조부용 자재의 품질기준을 상향조정하고 품질관리도 강화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택자재의 생산기준을 한국공업규격(K.S)수준으로 상향조정

나. 주택자재생산업자의 자체품질시험기준 강화

다. 공동주택의 쓰레기투입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규정을 폐지하고 폐기물관리법이 정하는 폐기물보관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주택자재의 품질관리 강화

- 정부는 주택건설업체가 공사에 불량자재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주택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주택건설에 사용되는 주요구조부용자재(벽돌·블록·창호·콘크리트조립식부재등 18종)의 품질기준을 상향조정하고 품질관리도 강화하였다.

이를 위하여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을 공포하여 '92.12부터 시행한다.

- 건축물에 사용하는 주요 건축자재중 100여종은 한국공업규격(K.S)자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고, 이와 더불어 주택건설에 주로 사용되는 18종의 주택자재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등록을 받아 일정한 생산·시험설비를 갖추고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중 일부 주택자재(벽돌·블록·기와등)에 대하여는 주택자재생산업자의 영세성등을 고려하여 K.S규격보다도 다소 완화된 수준의 규격 및 품질기준에 따라 운영하여 왔으나, 보다 나은 주택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이들 자재의 품질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어 그 규격 및 품질기준을 한국공업규격의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 또한 이들 18종의 주택자재에 대하여 시·도등 감독기관이 정기(연 1회이상) 또는 수시(연 2회이상) 전국 3,900여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보다 철저한 품질관리를 하기 위하여는 주택자재생산업자가 스스로 품질관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택자재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자체품질시험항목을 세분화하고, 이에 따라 생산업자가 생산과정에서 자체품질시험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콘크리트조립식부재에 대하여는 안전성등을 높이기 위하여 휨강도시험과 골재의 염분 함유량시험항목을 추가하였다.
- 또한, 창문용 자재에 대하여는 창문을 가공, 조립하는 자에 대하여만 등록을 의무화 하고 있던 것을 창문의 품질은 가공, 조립보다 그 구성재인 틀재의 품질이 좌우하므로 알루미늄 창틀재 및 합성수지 창틀재를 생산하는 자도 등록을 하도록 하고 규격 및 품질기준을 신설하였다.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주택단지에는 폐기물관리법이 정하는 폐기물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게 된 반면, 공동주택의 쓰레기투입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규정은 폐지되었으므로 동 쓰레기투입시설의 규격 및 마감등에 관한 기준을 삭제하였음.
- 따라서, 새로운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

구 분	내 용
주택자재의 기준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주택자재(벽돌·블록·기와등)의 규격 및 품질기준이 한국공업규격(K.S)수준으로 상향 조정됨</li> <li>• 주택자재 생산업등록대상 주택자재 18종에 대한 자체품질 시험기준이 강화됨</li> </ul>
주택자제품 질기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루미늄창틀재 및 합성수지창틀재에 대한 규격 및 품질기준이 신설되어 이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도 주택건설촉진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자재생산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창호의 가공, 조립 및 주택건설 공사에는 이 등록자재를 사용해야 함</li> </ul>

※ 주택자재생산업자의 자체품질시험이란 생산과정에서부터 주택자재의 불량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생산자가 공장에서 일정한 생산량마다 시료를 채취(벽돌의 경우 10,000매 생산단위마다 5매의 시료를 채취)하고 품질시험기준에 따라 공장에 자체보유, 설치된 시험기를 이용하여 스스로 시험을 실시하고 그 시험결과를 기록, 보존하여 시·도의 관계공무원이 이를 확인, 감독하는 것을 말함.

## 주택자재생산업등록대상자재(18종)

- |                    |               |              |            |
|--------------------|---------------|--------------|------------|
| 1. 보통벽돌            | 2. 보통블록       | 3. 시멘트벽돌     | 4. 속빈시멘트블록 |
| 5. 보통시멘트기와         | 6. 콘크리트조립식부재  | 7. 목재창호 및 틀  |            |
| 8. 콘크리트창호 및 틀      | 9. 알루미늄창호 및 틀 | 10. 철재창호 및 틀 |            |
| 11. 합성수지창호 및 틀     | 12. 고압벽돌      | 13. 고압블록     | 14. 토공벽돌   |
| 15. 토공블록           | 16. 토공기와      | 17. 가압시멘트판기와 |            |
| 18. 경량기포콘크리트 조립식부재 |               |              |            |